

## 붙임 7

##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

| 장애유형 및 정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기시험 편의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접시험 편의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<br>(원본 각1부)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지 체<br>장애인 | 상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<br>·별도 시험실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<br>·도우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<br>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별도 시험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<br>·도우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뇌병변<br>장애인 |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<br>·별도 시험실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<br>·도우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<br>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<br>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<br>·의사진단서  |
|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시 각<br>장애인 |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     |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<br>·도우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<br>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장애<br>정도가<br>심하지<br>않은<br>장애인         | 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<br>·의사진단서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·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청 각<br>장애인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 |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<br>·시험시간 연장<br>·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<br>·도우미 지원 | ·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| 임신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|
|            | 일시적 신체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의사진단서             |

※ 기타 장애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지원 예정

※ 장애인증명서로 해당 여부 파악이 어려울 경우, 의사 진단서 등 추가 제출 요청 예정

##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

### □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의사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,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- 다만, 임신부의 경우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

### □ 발급일자: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### 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(※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)
-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신청 하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 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  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#### 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| 장애유형    | 장애정도              | 예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①~③ 반드시 기재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시 각 장애인 | 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인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<br>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<br>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<br>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        |             |
| 뇌병변 장애인 |                  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<br>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<br>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<br>-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<br>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 |             |